

2022 세법학 I II (1쇄) 정오표

2022년 5월13일 현재까지 오류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.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, 학원(나무경영아카데미)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세법학 I >

page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2-171	상8	<u>25/100,000</u>	<u>22/100,000</u>
2-304	상17	④ 2021년 4월 1일부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: 3억원	삭제
2-311	하1박스	조정대상지역 <내용 변경 및 ㉠㉡ 삭제 >	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)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<적용시기> 22.5.10. 양도분부터 적용한다.
2-338	하14	(다만,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.)	(다만,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2022.5.10.~2023.5.09.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)
2-343	하2	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	<추가> 다만,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.5.10. ~ 2023.5.09.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만 적용한다.
2-345	상7	~한다(소법104㉠).	<추가> 다만,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.5.10. ~ 2023.5.09.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만 적용한다.
3-349	상12	~매출액의 <u>70%</u> 이상일 것	~ 매출액의 <u>50%</u> 이상일 것
3-370	하5	<u>25/100,000</u>	<u>22/100,000</u>
4-70	상8	~ <u>3,000억원</u> 미만인 기업일 것	~ <u>4,000억원</u> 미만인 기업일 것

<세법학 II>

1-268	하14	㉠ ~ 20만원 이하~	㉠ ~ 30만원 이하~
1-285	하4	25/100,000	22/100,000
1-310	상4	25/100,000	22/100,000
	하17	25/100,000	22/100,000
3-127	하10	(2)세액: 8.28억원×2%=20백만원	(2)세액: 8.28억원×2.52%=20,865,600원
3-149	하9	~납부지연가산세를~	~납부불성실가산세를~
3-184	하6	~납부지연가산세를~	~납부불성실가산세를~
3-186	하2	~납부지연가산세를~	~납부불성실가산세를~
4-22	하1		3) 내용 추가 -하단 참조-
4-129	하11	~2021년 12월 31일까지~	~2023년 12월 31일까지~
4-130	상3	~2021년 12월 31일까지~	~2023년 12월 31일까지~
	상14		
4-229	상14	25/100,000	22/100,000
4-277	상16	(그림) 중소기업: 한도있음~	중소기업 외 기업: 한도있음~
4-405	하9		박스 변경 -하단 참조-
4-408	하4	~(2021년 과세연도의~	~(2021년 및 2022년 과세연도의~
4-409	상1		박스 내 ㉠ 변경 -하단 참조-

4-22 하1 3) 추가

3) 알뜰주유소 전환 시 세액감면 특례 New 개정

중소기업이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(조특법7 ③).

세액감면 = Min[①, ②]

①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×감면비율(10%^{*1}, 15%^{*2}, 20%^{*3})

② 감면한도

- 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
: 1억원—5백만원×감소한 상시근로자 수
- ㉡ 그 밖의 경우: 1억원

- *1.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: 10%
- *2.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: 15%
- *3.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: 20%

여기서 한국석유공사와 다음과 같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.

-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
- ②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50%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
- ③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

4-405 하9 (1) 의료비 세액공제 박스 변경

의료비 세액공제액 = 1) × 15% + 2) × 15% + 3) × 20% + 4) × 30% **개정**

- 1)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액 = Min[①, ②]
 - ①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- (총급여 또는 사업소득금액) × 3%
 - ② 한도액 : 연간 700만원
- 2) 해당 거주자 본인·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자·장애인 및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*1
- 3)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*2
- 4) 난임시술비*3

*1 1)①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2)금액에서 뺀다.

*2 1)① 금액이 음수인 경우로서 그 금액을 2)금액에서 뺀 금액도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3)금액에서 뺀다.

*3 ① 금액이 음수인 경우로서 그 금액을 2)금액 및 3)에서 뺀 금액도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4)금액에서 뺀다.

4-409 상1 박스 내 ㉞ 변경

㉞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**개정**

- ㉞ 2021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5%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(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) × 10%
- ㉞ 2022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5%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(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) × 10%
- ㉞ 2022년 과세기간의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과세기간의 전통시장사용분의 105%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(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) × 10%